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춘선, 오금란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고,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희롱·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 조항을 규정으로써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하거나 성희롱·폭언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(안 제5조제4호 및 같은 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특정인을 비방하거나”를 “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제6호 중 “욕설”을 “성희롱·폭언·욕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</u>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욕설·음란물</u> 등 불건전한 게시물</p> <p>7. ~ 9. (생략)</p>	<p>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 명예훼손</u>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성희롱·폭언·욕설·음란물</u> 등 불건전한 게시물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삭제가 가능한 게시물에 대해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규정에 의한 게시물 관리 추가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